

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(2021. 12. 17.)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12월 29일

목포시의회  박 창 수 

목포시의회 규칙 제5호

##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의원면직의 제한)** 목포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제2호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

도가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」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
2.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
3. 감사원, 검찰·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(이하 “조사 및 수사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
4.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

**제3조(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)**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위반자에 대한 문책)**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)**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